

Part

3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협력

1 코로나19 지원

- 1_ 코로나19 지원사업
- 2_ 재난지원금

2 코로나19 협력

- 1_ 감염병대응 의료협의체 구성
- 2_ 민·관 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

나주시 코로나19 백서 시민과 함께 쓴 코로나 극복 3년의 기록



나주시 2차재난지원금 지급

3

코로나19 극복 지원 및 협력

코로나19 지원

01 코로나19 지원사업

1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비와 전파 방지비용을 지급하였다. 장례비용은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해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위로 비용이며, 전파방지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9조 등에 따라 화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사망한 자로부터 감염병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출된 비용이다. 장례지원비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총 8명에게 지원하였다.

추진성과 및 실적

연번	성명	사망일	지원금액(천원)		
			장례비용	전파방지비용	계
계	8명		80,000	13,734	93,734
1	이**	2021-09-24	10,000	1,724	11,724
2	정**	2021-10-29	10,000	2,060	12,060
3	나**	2021-12-06	10,000	2,780	12,780
4	김**	2021-12-14	10,000	1,680	11,680
5	김**	2022-02-02	10,000	1,930	11,930
6	이**	2022-01-27	10,000	1,510	11,510
7	조**	2022-01-19	10,000	2,050	12,050
8	민**	2022-01-23	10,000	0	10,000

2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긴급민생지원금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돌봄 종사자를 격려하고 이용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코로나19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긴급민생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에 노인돌봄 종사자 245명에 각 100천 원의 나주시 상품권을 지원하고, 노인돌봄 종사자 및 이용자 3,716명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였다.

노인돌봄 종사자 민생지원금

구분	수행기관	대상자(명)
계		24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63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66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9
어르신지킴이단	읍면동	107

마스크 지원

구분	수행기관	대상자(명)	비 고
계		3,71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1,100	1인당 23매씩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1,000	1인당 23매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	1,487	1인당 23매씩
어르신지킴이단	읍면동	129	1인당 23매씩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코로나19로 상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 지원, 그 밖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계지원은 1차는 3개월, 2차는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 원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현장확인 후 지원 결정 및 지급하였으며, 소득 및 재산 등 사후조사 후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급하였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 기준은 152,000천 원(중소도시),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로 산정하였다. 나주시는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긴급복지 지원 기준에 따라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다.

추진 실적

2020. 긴급지원 집행액 711,030천원	2021. 긴급지원 집행액 1,140,434천원	2022. 긴급지원 집행액 839,459천원
--------------------------------	----------------------------------	--------------------------------

4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시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격리자의 소득 공백기에 생활지원비를 지급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도록 하였다.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가구원 수로 산정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였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2월 17일 현재 총 393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단위: 천원)

추진 실적

2020.	2021.	2022.
총 286건 금 200,002천원 지원	총 5,225건 금 4,580,884천원 지원	총 20,748건 금 4,816,818천원 지원

5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나주시는 기존 복지제도가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시행하였다. 지원 대상은 소득 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5억 원 이하의 가구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이에 총 2,412가구가 지원받은 것을 집계되었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6 한시 생계지원 사업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에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재산 3.5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 원씩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총 4,355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기준 중위소득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원/월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5,622,899

총 4,355가구

추진실적
(2021년)

1,363,000천원 지원

7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제도를 시행하였다. 2021년 8월 24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하였으며, 이에 총 5,758가구 8,196명이 지원을 받았다.

추진실적
(2021년)

총 5,785가구 / 8,196명

= 총 819,600천원 지원

8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취약계층 돌봄인력은 감염병 국면에도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마스크를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어린이집, 시설종사자, 임신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마스크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인력 1인당 마스크 80매를 현물로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 노인사회복지시설, 임신부, 기타 취약계층에 총 6,940개의 진단키트를 배부하였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천원)

예산액(총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397,796	198,898	198,898	397,597	198,798	198,798	329

진단키트 지원 실적

(단위: 개)

계	어린이집	노인 사회복지시설	임신부	노인 외 사회복지시설 (아동, 장애인, 정신지체인, 노숙인)	기타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수급자)
6,940	1,525	801	141	1,062	3,411



현장배부



마스크

9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

코로나19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딸기 재배 농가를 돕기 위해 나주시 산하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참여로 '딸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 2월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5일간 산포 농가 및 남평·산포농협과 연계한 딸기 사주기 운동은 농가와의 협의 후 단가를 결정, 중 1만 원, 소 8천 원에 딸기를 판매하였으며, 판매 목표 1천 개 대비 165%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총무·미래전략산업·미안전도시건설국, 의회 등의 나주시 산하 기관을 비롯하여 동신대학교, 국립나주병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등의 유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이 딸기 구입에 동참함으로써 딸기 소비 추진 확대를 도모하였다. 2020년에는 국내 교류도시 지원사업을 통해 나주 배급 960박스를 판매하였으며, 관내 멜론과 한라봉 사주기 운동을 통해 866박스를 판매한 바 있다.



사랑의 딸기 사주기 운동



10 농기계 임대료 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철에 극심한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 촉진으로 일손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료 전액면제 사업을 시행하였다. 이에 총 10,149건, 1,061,410천 원을 감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 기준 전년대비 임대료와 건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임대료 감면 사업을 시행하여 나주시민은 기존과 동일하게, 타 지역 농업인에게는 50%를 감면하여 임대함으로써 타 지역에도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추진 성과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임대료	건수	임대료	건수	임대료	건수
계	1,061,410	10,149	478,419	7,679	122%	34%
3월	16,388	186	12,630	163	30%	14%
4월	146,754	1,551	51,725	915	184%	70%
5월	163,512	1,429	82,926	1,197	97%	19%
6월	130,165	1,421	63,431	1,126	105%	26%
7월	84,604	988	51,122	891	65%	11%
8월	89,137	841	42,885	624	108%	35%
9월	90,468	792	24,332	400	272%	98%
10월	114,086	974	48,976	655	133%	49%
11월	124,600	1,195	57,363	1,111	117%	8%
12월	101,696	772	43,029	597	136%	29%

11 농기계임대사업소 방역물품 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방역물품은 스탠드체온계, 마스크, 방역키트, 목장갑, 니트릴장갑 총 5종 497개로, 나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 외 분점 6개소에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역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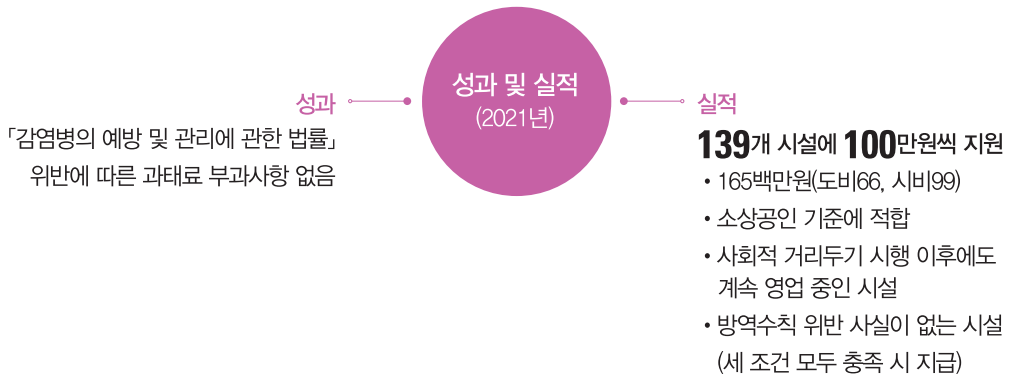
구입품목

구입품목	단가	수량	금액
스탠드체온계	154,170	6	925,000
마스크	21,500	80	1,720,000
방역키트	16,000	100	1,600,000
목장갑	27,500	21	577,500
니트릴장갑	27,500	21	577,500
계	246,670	497	5,400,000



12 민간 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관내 민간 체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체육시설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생활 안정자금은 2021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접수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8월 31일 까지의 기간 동안 집합제한 등을 받은 시설을 대상으로 총 139개소에 각 100만 원의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였다. 단,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기준 부적합 시설, 2020년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전 폐업한 시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은 제외되었으며, 조사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소상공인 관련 지원 및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 조치로 위축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관련 지원사업으로 2020년에는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을, 2021년에는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지원사업으로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2022년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비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였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대상자 나주시사랑상품권 지급

(단위: 명, 천원)

	1차	2차	3차	4차(추가지원)	총계
접수기간	'20. 4. 7.~ 4. 29.	'20. 5. 2.~ 5. 14.	'20. 5. 14.~ 5. 29.	'20. 6. 15.~ 6. 26.	
지급인원	2,490	490	698	45	3,723
지급액 ※ 30만원/인	747,000	147,000	209,400	13,500	1,116,900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단위: 천원)

	1차	2차	3차	4차	총계
접수기간	'20. 6. 16.~ 6. 19.	'20. 8. 7.~ 8. 20.	'20. 11. 30.~ 12. 11.	'20. 12. 15.~ 12. 22.	
개소수	7	6	33	24	70
지급액 ※ 300만원/개소	21,000	18,000	99,000	72,000	210,000

코로나19 대응 전통시장
방역용품 지원사업
추진실적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지원기간 | 2022. 1. 28. ~ 9. 30.
지원실적 | 1,128명/116,346,990원
※ 지원 가능 사업체 2,709명(지원율: 41.6%)

착한 소비자 운동
선(先)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고자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주일 단위로 관내 공공기관, 읍면동, 단체 등의 참여 아래 선(先)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릴레이 챌린지는 3월 17일 나주시장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후속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선결제 캠페인 동참 사진을 SNS 또는 나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선결제 캠페인 동참 사진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기관 및 개인별로 소매점과 음식점 등에 선결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착한소비자 선결제 참여와 홍보 동참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선결제 릴레이와 챌린지 방식으로 소비 촉진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다.



착한 소비자 운동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회계과)



착한 소비자 운동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시민봉사과)



착한 소비자 운동 선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선(先)결제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추진 결과

2021. 3. 10.
챌린지 전개 알림 및 홍보
홍보대: 읍면동,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동신대학교, 농협나주시지부 등
시 홈페이지 내 「소상공인」 창구 개설
개설목적: 「선(先)결제」캠페인
동참 사진 및 내용 게시공유
※ 매뉴 위치: 참여민원 → 시민참여 → 「소상공인」 창구

2021. 4. 6.
• 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착한 선결제 쿠폰」 제작 및 배부
• 착한소비자 운동 선(先)결제 참여 실적: 71개소, 35백만원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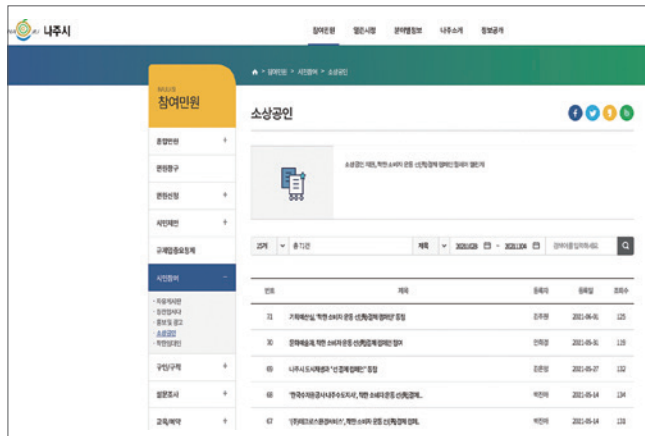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을 실시하였다.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면서 3월 1일 이후 사업자 신규 신청 노점상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전통시장 외 노점상에 1인당 각 5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은 점포형 상점에서 영업하지 않으며 시장 사용료 및 상인회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외 노점상은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노점상이다. 새희망, 버팀목 자금 및 복지부·농축산식품부 시행 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총 4차에 걸쳐 79명이 지원을 받았다.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결과





선결제 쿠폰



나주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창구



윤병태 나주시장, 소상공인 대표자와 간담회(코로나19 고물가 여파로 침체된 전통시장, 상점가 애로사항 청취)

14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지역상권이 침체하고 있으며, 이에 음식점 등 소상공인의 매출 70~8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생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동결하고 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여 수수료 감면을 추진하였다.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사업은 음식물찌름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 후 무상수거하는 방식으로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음식점 1,583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5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추진 성과 및 실적

성과

무상 수거를 통해 1개 업소당
월평균 수수료 **10,000원** 감면 효과

추진 성과 및 실적

2020. 5. 18. ~ 9. 20.
(약 4개월), 한시적 감면

실적

4개월 한시적 운영 기간 동안
6,332만원 감면
(40,000원* 1,583개소)



나주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안내

「코로나-19」정기화에 따라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소형음식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대 상 소형음식점(일반·휴게 음식점 200㎡ 미만)
※ 다량배출사업장 제외

기 간 2020년 5월 18일 ~ 9월 20일(4개월) ※ 한시적 허용

배출방법 배출시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수거용기 배출
→ 무상수거 기간동안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
※ 수거 완료된 수거용기는 방치하지 않고 해당 음식점주 회수 조치

수거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수거문의 청소지원과 (339-8943) / (주)환경개발(333-1011)

음식물쓰레기 수거일정 (기준과 동일)

수거요일	구 분	수거업체
월, 수, 금	세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신포, 다도, 봉황, 영강, 영산, 아랑, 빛가람	㈜환경개발
화, 목, 일	남평, 다시, 문평, 노안, 금천, 송월, 금남, 성북	

나주시

15 코로나19 안심콜 서비스 지원

코로나19 초창기에 시행했던 수기명부 작성은 개인정보 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간편한 출입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안심콜 서비스를 추진하였다. 2020년 11월 26일부터 본청, 시민봉사과,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동 등 26개소가 안심콜 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그 외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등은 관리부서에서 효용성과 운영관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도입을 결정하였다. 안심콜 서비스 시스템은 1개소별 1개 청사에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발신자가 지정번호에 전화하면 교환기에 발신자 번호가 저장되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방문자 정보는 4주 후에 자동 삭제되는 방식이다.

이용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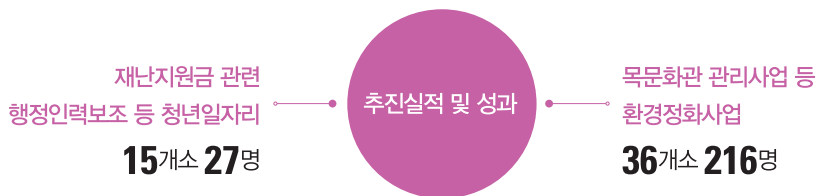
추진 성과 및 실적

구분	성과	실적
2021년	중점관리시설 2,034개소 대상 안심콜 도입(→3,409개소로 확대)	• 9~12월 요금 8,791천원 집행 • 월평균 475,000회 사용
2022년	방역패스 완화에 따른 3월부터 안심콜 서비스 중단	• 1~3월 요금 5,624천원 집행 • 최종 4,154개소 적용



16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DB 구축 업무지원, 재난지원금 행정보조 등 청년지원사업과 체육시설물 정비지원, 문화재 관리 등 공공휴식공간 개선을 위한 6개 유형 49개 사업을 마련하고, 청년일자리 15개소 27명, 환경정화사업 36개소 216명의 일자리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및 실업자 등 2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단기 일자리 제공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인력 지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7 코로나19 방역 소독조치 이행기관 손실보상

2020년 7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진행하였다. 방역 관련시설과 장비, 인력 손실 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하였으며, 신청접수는 보건소에서, 결정 및 지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였다. 2020년 신청 건수는 10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66건에 달했으며, 이에 총 58,052,940원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신청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신청 건수	10	158	66
보상 금액	5,297,050	92,728,960	58,052,940



소독조치 의료기관

18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위증증 고위험집단인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물품을 취약시설에 우선 지원하였다. 2020년 2월, 취약계층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 또는 시설 요청 시 마스크, 수술용 가운, 페이스실드, 장갑, 위생모자 등의 방역활동 물품을 지원하였다. 방역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의 부담 완화를 도모하였다.

(단위: 개)

구분	마스크	수술용가운	페이스실드	장갑	위생모자
2020년	113,830	1,220	2,851	-	-
2021년	175,160	9,690	11,412	-	-
2022년	26,200	11,142	11,871	30,021	1,500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19 의료기관 방역물품 지원

2020년 초, 코로나19 발생 초기 요양병원과 병원, 감염취약시설 등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방호복, 안면보호구, 자가진단키트 등의 방역물품을 배부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다. 2020년 2월, 요양병원 8개소에 손소독제 600개, 포스터 600매, 전단지 1,900매를 전달하고 3월에는 요양병원 8개소에 마스크 3,000장을, 5월에는 요양병원 8개소에 방호복 160개, 안면보호구 160개를 전달하였다. 2021년에는 명절에 대비하여 요양병원에 자가진단키트 1,200개를, 감염취약시설 76개소에 자가진단키트 24,680개를 배부하는 등 의료기관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관리에 기여하였다.



추진실적

2020. 2. 21. 요양병원 8개소 3,100개 (손소독제 600, 포스터 600, 전단지 1,900)	2020. 3. 요양병원 8개소 마스크 3,000장	2020. 5. 요양병원 8개소 방호복 160개 안면보호구 160개
2021. 12. 감염취약시설 76개소 자가진단키트 24,680개 배부	2021. 7. 명절대비 요양병원 7개소 자가진단키트 1,200개	2020. 12. 병원 9개소 마스크 3,800장
2022. 1. ~ 5. 요양병원 7개소 자가진단키트 44,038개	2022. 3. 감염취약시설 27개소 방역물품 7종 약 100,000개 배부	2022. 11. 요양병원 등 10개소 방역물품 3종 15,100개 배부

20 예술인, 공연업체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공연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과 공연업체에 긴급복지지원금 및 긴급민생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2020년 8월에 시행한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 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다. 2021 코로나19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은 2021년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안정 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였다.

공연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도 시행하였다. 2021년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까지 공연 관련 업체 민생안전지원금을 통해 나주시 소재 공연기획업, 무용 및 음악단체, 연극단체, 공연 및 제작관련 대행업, 기타공연단체, 공연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의 공연 관련 업체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업하고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으로 매출 규모가 감소한 업체에 한하여 업체당 1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추진 성과 및 실적

구분	성과	실적
2020년	코로나19 장기화로	• 예술인 23명 총 11,500천원 지급
2021년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생계 안정 도모	• 예술인 111명 총 55,500천원 지급 • 공연업체 6개소 총 6,000천원 지급

21 여가 문화시설 피해보상

집합금지 행정조치로 여가 문화시설의 경영난이 악화됨에 따라 휴·폐업 등의 생계곤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2022년 12월 기준, 나주시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과 뽑기방, 영화관 등의 다중문화이용시설은 총 75개소에 달한다. 나주시는 2020년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2021년 3차,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는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다중문화이용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였다.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도 주관	1	1	-	2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1	3	5	9

재난지원금 지급 횟수

추진실적

2020

- 2020. 9. • 전라남도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도 지원사업)
지급대상 게임장, 오락실(새희망자금 미포함 업종)
지급액 100만원
총 지급액 1,300만원(13개소)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집합금지(200만원), 영업제한(150만원), 매출감소 업종(100만원)
집합금지 PC방, 노래연습장(각 200만원)

2021

- 2021. 1. •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집합금지(300만원), 영업제한(200만원), 매출감소 업종(100만원)
- 2021. 3.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집합금지(500만원), 영업제한(300만원), 매출감소 업종(100만원)
영업제한 업종 노래연습장(300만원)
- 2021. 10. •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금(사도비, 도 지원사업)
지급대상 2021. 9. 5. 이전 등록된 관내 노래연습장업소 33개소
지급액 100만원
총지급액 27,000천원 / 6개소 미신청(6,000천원 미지급)
- 2021. 12.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2021. 12. 18.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조치 이행 소상공인
지급액 업체당 100만원
해당업종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2022

- 2022. 1.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업종(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지급액 업체당 방역관련 물품구매 비용 최대 10만원 지원
- 2022. 3. •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지급액 업소당 최소 50만원(차등지급)
- 2022. 5.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지급액 업소당 600~ (규모별 차등)
- 2022. 7.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지급액 업소당 최소 100만원(차등지급)
- 2022. 10.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국비,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급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시설(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영화관)
지급액 업소당 최소 100만원(차등 지급)

22 임신부 건강관리비, 방역물품 등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위험 감염 취약계층인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선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9월 24일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거주하고 발표일로부터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 코로나19 예방 임신부 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임신부를 대상으로 KF94 마스크를 지급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공공산후조리원 임신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키트를 지급하였다.

추진 실적

사업명	지원 대상	추진 실적
코로나19 긴급민생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제2차 긴급민생지원대책 발표일(9. 24.) 기준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거주하고, 발표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임신 중임이 확인되는 자	임산부 406명 / 81,200천원 지원
코로나19 예방 임산부 방역물품 지원	관내 등록 임신부	KF94 마스크 5,069개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방역물품 지원	관내 공공산후조리원 임산부 및 종사자	코로나19 신속항원키트 376개 지원



나주시 임신부 등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임산부건강관리비 지급 현수막

일시 | 2020. 9월경
장소 | 관내 25곳
내용 | 코로나19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 홍보

23 안심식당 운영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을 제외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영업장에 덜어 먹는 도구 사용,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같이 식사문화 3대 개선과 직접 관련된 물품을 지원하는 안심식당 운영 사업은 2020년 121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에는 35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총 121개소의 안심식당이 운영 중이다. 지정소에는 안심식당 지정스티커를 부착하고 일회용 앞치마, 덜어 먹기 집게, 앞접시, 도마 등의 물품을 지원하며, SNS를 통해 안심식당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추진실적 및 성과

집행실적	26,873천원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2020년: 9,620천원 2021년: 13,990천원 2022년: 3,263천원	
안심식당 지정	2020년: 64개소	• 아크릴 가림막 제공 및 설치 지원
	2021년: 22개소	• 1개소당 일회용 앞치마 80개 지원 • 1개소당 일회용 집게 3개 지원 • 앞접시 187세트 지원
	2022년: 35개소	• 위생 도마 지원
지정업소 물품 지원	• 안심식당 지정스티커 부착 • 업소당 15만원 정도 물품지원 (일회용 앞치마, 덜어 먹기 집게, 앞접시, 도마) • 다음, 네이버, 카카오맵 등 안심식당 위치 및 지정정보 제공	



24 식품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

식품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방역물품 지원에 나섰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안심식당 65개소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림막을 지원하고, 2021년 5월 28일부터 6월 11일까지 유흥·단란주점 86개소, 안심식당 86개소, 이·미용업 326개소, 숙박업 57개소, 목욕장업 10개소에 마스크와 소독제, 손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배부하였다. 이어 2022년 3월에는 이용업 34개소, 미용업 326개소에 비접촉 체온계를 배부하였다.

추진실적

지원 내용	지원대상	지원물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반음식점(안심식당) 가림막 지원	안심식당 65개소	비말방지 아크릴 가림막 업소당 3개 지원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	식품위생업소: 유흥·단란주점 86, 일반음식점 (안심식당) 86개소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 326, 숙박업 57, 목욕장업 10개소	마스크 10,000장, 소독제 2,030개, 손소독제 1,130개
2022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이·미용업소 대상 방역물품 지원	이용업 34개소, 미용업 326개소	비접촉 체온계 360개 (업소당 1개씩 배분)



25 대중교통 운수업체 관련 방역물품 지원

2020년 11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지침이 시행되었다. 나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만여 개의 방역물품을 지급하였다.

(2020~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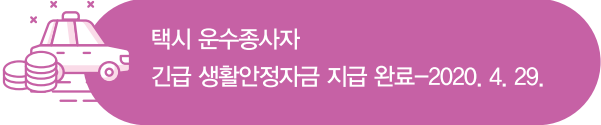
방역물품 지급 현황

구분	마스크	손소독제(500ml)	소독약(1리터)	비고
합계	140,205	2,267	606	
버스	81,801	515	167	(주)나주교통
버스터미널	720	237	52	4개 (나주·영산포·다시·동창)
택시	26,716	1,485	159	개인택시(지부, 법인택시)(17개)
전세버스	30,968	30	228	

26 코로나19 택시 운수종사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0년 3월 31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였다. 이에 2020년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택시 종사자 258명에게 1인당 1회 500천 원의 금액을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였다.

추진실적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택시 종사자 258명 (일반 103, 개인 155)	129,000천원 (1인당 500천원)	나주시사랑상품권 일괄 지급

27 여행업체 민생지원금·홍보마케팅 긴급지원금 지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자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행하였다. 여행업체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사업은 2020년 6월 말 기준 전남에 등록된 여행사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9일부터 2020년 9월 25일까지 신청 접수를 실시하여 업체당 300만 원의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제반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여행업체 민생지원금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9일부터 2021년 10월 8일까지 접수를 통해 관내 등록된 여행업체 29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200만 원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지원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추진실적



28 경영안정지원 및 융자 지원

제조업체 대상 융자 지원

사업자등록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갖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에 필요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였다. 나주시는 광주, 농협, 기업, 축산농협 등 8개소의 은행과 협약을 맺고 매년 수시접수를 통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금리는 연 2.0%의 조건으로 기업당 4억 원 이내의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였다.

(단위: 개사, 백만원)

추진실적

구분	신청		선정(대출실행)	
	기업수	대출금액	기업수	대출금액
2020년	22	6,876	19	5,956
2021년	9	2,770	9	2,770
2022년	11	4,186	11	4,186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재난 극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안정 및 융자 지원을 실시하였다.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은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소상공인 이차보전지원 사업,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까지 융자 지원, 이차 지원, 간접 지원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였다.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창업과 운영자금 융자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였으며,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 경영 안정을 찾는 데 기여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었으며,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사각지대의 안전망 역할과 더불어 금융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액은 411백만 원으로 2021년 3월, 2022년 3월, 2022년 9월 총 3회에 걸쳐 137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단위: 명, 백만원)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

구분	신청(결정)		추진실적(완료)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70	3,435	24	1,000
2020년	24	1,165	7	310
2021년	20	1,057	6	238
2022년	26	1,213	11	452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구분	성과	지원실적(업체/이차보전액)
2020년	5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6월: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 협약	48개 업체 / 12백만원
2021년	9월: 행안부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 선정(국비 30백만원 확보)	123개 업체 / 69백만원
2022년	10월: 조례 개정(지원대상 확대) ※ 타 지역 거주 나주시 사업장 포함	154개 업체 / 108백만원

29 나주시사랑상품권 할인 연장 및 할인율 상향

2020년 2월 28일, 코로나19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에 나주시는 골목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나주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착수하였다. 2020년 3월, 나주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4개월간 10%를 확대하고, 이어 9월에는 지류형 상품권의 단점을 보완하여 나주시사랑상품권을 카드형 상품권으로 신규 출시하였다. 2021년 1월에는 할인율 10%로 1인당 월 70만 원 한도로 나주시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 4월에 이르러 1/4분기 판매액이 500억 원

에 달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1년 4월 기준, 나주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100개소에 달하며, 2022년 1월에는 연중 10% 할인 판매를 시행하였다.

(단위: 억원)

나주시사랑상품권
판매액 및 투입 예산액

구분	판매액			투입예산액	할인율
	계	지류형	카드형		
2020년	836.8	784.4	52.4	58.0	8~10%
2021년	1,326.1	1,056.5	269.6	104.8	5~10%
2022년	1,222.3	844.7	377.6	114.8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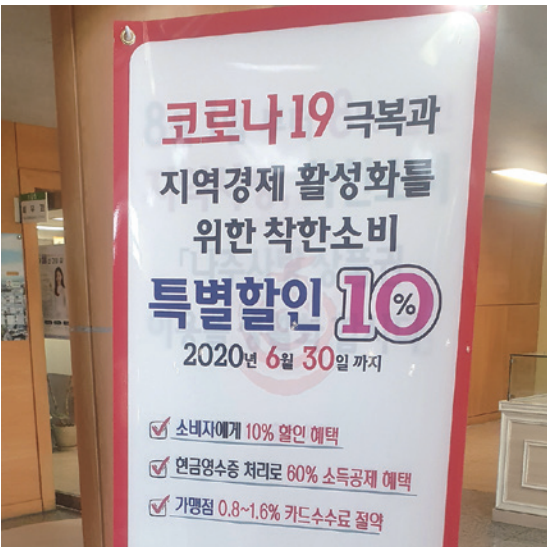
판매액 갱신(2021. 4. 26.)



뉴스림 - 전통시장 장보기 독려 10% 할인(2022. 9. 6.)



나주시사랑상품권



나주시사랑상품권 10% 할인 배너

30 착한 임대료 감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0년은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021년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단, 「지방세법」 제177조 제4호의 고급오락장, 특수관계인, 사업장이 주거용인 경우는 배제하였다.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 2020년은 최대 50%까지, 2021년은 최대 100% 감면하며, 최소 10% 이상 인하 시 감면하고, 감면 한도는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다.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 대상 및 내용

감면 대상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
-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이 제한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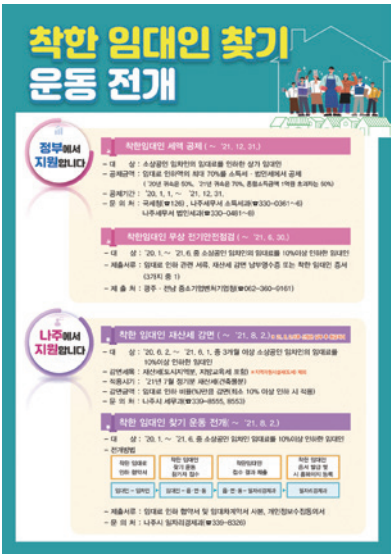
감면내용

고급오락장용 재산세(건축물)에 대한 종과세율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2.5, 일반세율로 2021년도에 한해서 일반과세

(단위: 원)

착한임대인 감면세액

과세연도	참여인원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2020년	27	6,860,436	5,717,030	1,143,406
2021년	16	2,512,875	2,227,137	285,738



착한 임대인 찾기 운동 전개

(단위: 원)

고급오락장 감면세액

과세연도	대상업소	계	재산세	지방교육세
2021년	19	52,013,520	43,344,600	8,668,920

(단위: 원)

6개월 범위 내 징수 유예 (지방세징수법§25)

과세연도	세목	건(세액)	징수유예기간
2021년	재산세(건축물)	23건(12,876,580원)	6개월

31 세금 관련 납부기간 연장,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지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지방세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지원을 시행하였다. 지방세 지원사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을 연장하고,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를 연기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조치한다. 지방세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피해 극복을 위해 피해 양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지방세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취득세(신고분·수시분) 징수유예 등 지원

코로나19로 확진, 격리, 휴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비롯하여 직·간접 피해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였다.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유예하고 압류·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신청자는 지방세 기한 연장 신청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전년도 대비 매출액 감소 등 사업상의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단위: 원)

추진 실적

과세연도	세목	세액	징수유예기간	징수유예사유
2020년	취득세 (기타)	18,405,730	2021. 4. 1.~ 2021. 9. 30. (6개월간)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매출실적 부진,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
2021년		4,234,760		
2022년		33,479,380		

* 분할고지: 3건/56,119,000원

세외수입분야 징수유예 등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분야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시행하였다. 2021년 2월 17일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전남도 통보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겪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압류 1년 내의 범위에서 유예하고,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 분할 납부를 실시하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따르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각종 개별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시행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추진실적

구분	성과	실적
2021년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고지·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7,126건(632,663천원)
2022년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분할 고지), 체납처분유예 등	3,507건(512,888천원)

지방세(연장유예) 및 세무조사 유예 지원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납세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지원에 나섰다.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지방소득세 징수유예,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취득세를 분할 고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연기하였다.

기한연장 실적

지원일자	세목명	건(세액)
2020. 4. 27.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건(42,019,840원)
2020. 5. 1.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건(302,904,600원)

*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징수유예 실적

지원일자	세목명	건(세액)
2020. 9. 22.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건(6,521,990원)
2021. 3. 15.	주민세(재산분)	4건(2,638,440원)
2021. 6. 25.	주민세(재산분)	4건(805,830원)

*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지방세징수법 §25, §105)

분할고지 실적

지원일자	세목명	건(세액)
2020. 6. 26.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건(7,699,060원)
2021. 6. 18.	취득세(부동산)	4건(50,267,370원)
2021. 6. 18.	재산세(토지)	3건(3,756,700원)
2021. 7. 12.	취득세(부동산)	7건(12,423,960원)
2021. 8. 20.	취득세(부동산)	1건(46,444,480원)
2021. 8. 29.	취득세(부동산)	1건(54,177,470원)
2021. 9. 24.	재산세(토지)	8건(33,294,400원)
2021. 9. 24.	취득세(부동산)	4건(158,279,230원)
2021. 9. 29.	재산세(토지)	6건(16,195,500원)
2021. 9. 29.	취득세(부동산)	2건(112,056,030원)
2021. 10. 8.	취득세(부동산)	1건(445,438,700원)
2021. 10. 28.	취득세(부동산)	2건(107,550,350원)
2022. 1. 26.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건(86,346,770원)

*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분할고지(지방세징수법 §25, §105)

32 수도권요금 감면

지원일자	지원내용	건(세액)
2020. 9. 1.	조사 연기	17건

* 세무조사 결정(자치단체장) 기간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공서를 제외한 전체 시민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였다.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24,992건, 하수도 14,245건 총 39,237건의 상하수도 요금을 별도의 신청 없이 50%를 감면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동결하였다.

일시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총 감면 건수 / 금액
2020년 4월	38,680건 376,757천원	49,611건, 153,605천원	88,291건 530,362천원
2020년 5월	38,721건 428,395천원	24,729건, 75,935천원	63,450건 504,330천원
2020년 6월	39,074건 475,943천원	24,882건, 77,670천원	63,956건 514,539천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농가와 공급업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공급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다. 2020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72개교, 17,146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하여 학생 가정에 공급하였다. 꾸러미는 곡류, 과일류, 채소류 등 공급이 가능한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혼합 구성하였으며, 대상 학교 배송 주소를 제공 받아 2020년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배송을 실시하였다.

구분	학교수 (개소)	학생수(명)	자원단가 (원)	총 사업비(천원)		
				계	보조	학교부담
계	147	13,615		512,520	326,760	185,760
어린이집	67	647	24,000	15,528	15,528	-
유치원	26	1,358	24,000	32,592	32,592	-
초등학교	24	5,819	40,000	232,760	139,656	93,104
중학교	17	2,462	40,000	98,480	59,088	39,392
고등학교	12	3,218	40,000	128,720	77,232	51,488
특수학교	1	111	40,000	4,440	2,664	1,776



34 전광판 홍보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가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나주 중앙로 상사거리에 공공미디어시설인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홍보,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홍보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와 홍보 영상,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 영상, 공공 캠페인 등 70여 건의 영상을 수천 회에 걸쳐 송출하였다.



35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정부의 출생연도별 마스크 판매 시행 지침에 따라 시민들에게 주민등록표 등본을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나주시는 2020년 3월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 종료 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또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였다. 아울러 마스크 구입 사유가 아닌 경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발급 현황

(2020. 3. 9. ~ 2020. 5. 31. 기준)



36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겨울 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 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농가당 바우처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한 농가를 대상으로 2021년 4월 12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아 2021년 5월 14일부터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하였다. 나주시는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해 2021년 4월 12일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영 위원회는 행정, 농관원, 농협 등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급 대상농가 결정 심의 등의 역할을 맡았다. 2021년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총 112농가에 112백만 원을 지원하였다.

37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19 피해에 특히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기 위해 2020년 소규모 농가로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였다. 2021년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있는 농·축협·농협은행에 방문신청을 통해 농가당 30만 원씩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방식 및 선불카드로 지급을 완료하였다. 사용기한은 포인트 충전 시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선불카드의 경우 8월 31일까지로, 이에 총 4,361농가가 지원받았다.

(단위: 명/원)

지급내역

바우처 대상금액		사용금액		사용잔액	
농가	금액	농가	금액	농가	금액
4,399	1,319,700,000	4,361	1,275,762,910	38	43,937,090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시행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가당 30만 원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수령받은 사람 중 '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지급방식** (1차) 농협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2차) 선불카드
 - 이용방법**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결제 시 사용 제한)
※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지급일과 관계없이 총합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1차) '21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2차) '21년 5월 14일(금) ~ 6월 30일(수)
(2차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
 - 신청방법** 농·축협 및 농협은행, 농협카드 온라인 홈페이지
 - 필요서류** 신청서, 본인신분증,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내국인·외국인 세무신고 내역 신청 시)
-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및 사용가능 업종은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4월 5일부터 확인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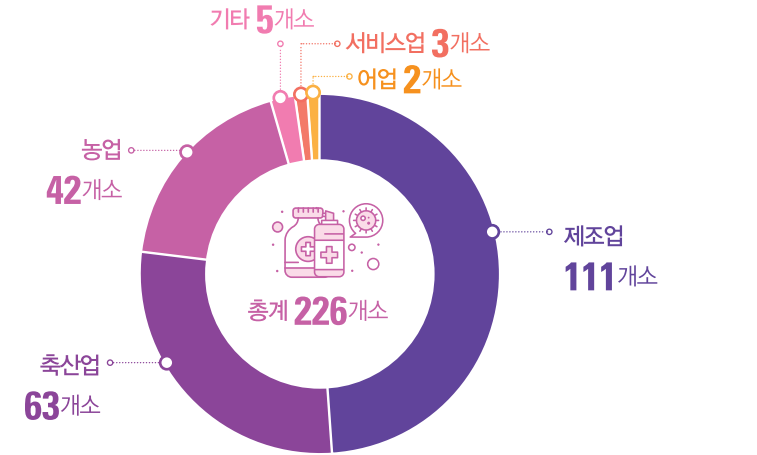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38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및 현장점검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지역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안내를 시행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고용업체 제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총 226개소를 대상으로 마스크와 살균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택배로 배송하였다. 또한, 2022년 1월에는 전남도청과 합동으로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현장점검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외국인 고용업체 방역물품 지원

마스크 80,000매
살균소독제 450개 지원



39 코로나19 장례식장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나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인원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장례식장 9개소에 개소당 1백만 원의 지원금을 장례식장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일괄 지급하였다.

추진실적

연번	시설명	지급액
계	9개소	9,000,000원
1	나주장례식장	1,000,000원
2	애향장례식장	1,000,000원
3	예담활주로장례식장	1,000,000원
4	한우리장례식장	1,000,000원
5	영산포농협장례식장	1,000,000원
6	영산포제일병원장례식장	1,000,000원
7	나주효사랑병원장례식장	1,000,000원
8	한국병원장례식장	1,000,000원
9	빛가람종합병원장례식장	1,000,000원

40 가축시장 코로나19 방역지원

가축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인 만큼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가 안전하게 가축을 거래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섰다. 2020년 3월 나주축협이 운영 중인 가축시장 1개소에 열화상카메라 2대와 캐노피 1개를 설치하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기차재와 소독약품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1997년 7월 나주시 이창동에 개장한 가축시장은 면적 10,362㎡ 규모로 매주 금요일에 평균 250~300두의 정매가 진행되고 있다.



41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을 실시하였다.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 사업을 통해 매출 감소 품목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4,000명에 임가당 100만 원씩,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을 통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명에 임가당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총 29임가에 10,100천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가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사업 개요

구 분	산림청 예산	지원 대상(전국 기준)	지급 규모	지원내용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43억원	매출 감소 품목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4,000명)	100만원/임가당	바우처 (포인트 등)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3억원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농업경영체 경영주 (10,000명)	30만원/임가당	바우처 (포인트 등)



02 재난지원금

1 나주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2021년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장기화로 모든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행에 나섰다. 2021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1월 26일 기준 인구 116,161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57,244세대수 112,008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나주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

추진실적

(단위: 명, 천원)

신청				지급			
세대수	인원	신청액	신청률	세대수	인원	지급액	지급률
57,295	112,070	11,207,000	96.48	57,244	112,008	11,200,800	96.42

2022년
재난지원금 지원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나주시는 2022년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당일 지급함으로써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였다.

추진실적

지급 대상	지급인원	지급액
116,709명	112,932명(96.7%)	11,293,200천원(지역화폐)



코로나19 협력

01 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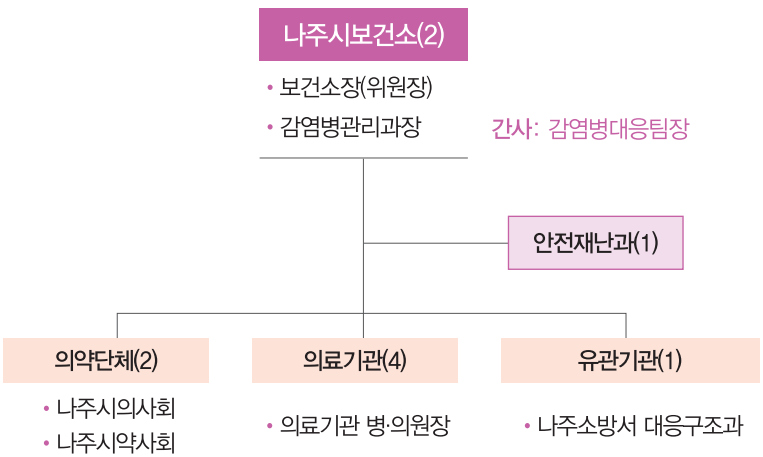
1 의료협의체 구성 목적 및 역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비롯하여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나주시와 의료계 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나주시 감염병 대응 지역의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 상황 속, 시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일반의료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서는 시(市)와 의료계 간에 협조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며 중요한 사안이다. 2022년 10월에 출범한 의료협의체는 당연직 4명, 위촉직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감염병 유행 확산 시에는 교육청과 경찰서 등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의료협의체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 공유를 비롯하여 논의 자문 등을 통한 방역·의료대응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복지시책 추진 과정의 논의기구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단체는 의료자문 및 제언·건의 등을, 의료기관은 환자 격리 및 의료 제공과 자율입원 병원 운영을, 소방서는 응급 의료기관 이송, 의료상담센터 안내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의료협의체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역 의료계와의 협의체 운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민건강증진 등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의료협의체 구성



02 민관 협력 및 유관기관 협력

1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2020년 2월 14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건소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시행하였다. 대책회의에는 읍·면·동 총무팀장 및 방역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교육, 경로당·마을회관·공중목욕탕 등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소독약품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어 2020년 7월 28일에는 보건위생과장 외 방역대책 5개반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 방역대책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고위험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준하는 관리 강화를 비롯해 선별진료소 운영·관리 및 유선상 의심신고자 관리,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대비 체계구축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2022년 7월 20일에는 부시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등 18명이 참석하여 ‘오미크론 BA.5 재유행 확산 관련 의료기관 등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긴급대책회의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추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후속 대응방안 등에 대한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회의명	일시/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읍면동 방역담당자 관련 긴급회의	2020. 2. 14. 보건소 회의실	20명 (읍·면·동 총무팀장 및 방역담당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교육 - 다중이용시설(경로당·마을회관·공중목욕탕) 방역소독 실시 알림 - 소독약품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 - 소독약품(테고SP) 및 소모품 배정
코로나19 관련 비상 방역대책 업무 관련 회의	2020. 7. 27. 보건소 회의실	6명 (보건위생과장 외 방역대책 5개반 팀장)	- 고위험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에 준하여 관리 강화 - 선별진료소 운영·관리 및 유선 상 의심신고자 관리 - 의사환자 발생 시 신속대비 체계 구축 - 자가 격리자 지속 관리 및 동선내 유학생 관리 - 기본적인 방역수칙 홍보 강화
오미크론 BA.5 재유행 확산 관련 의료기관 등 긴급대책회의	2022. 7. 20. 나주시 보건소 보건소장실	18명 (부시장, 의사회장, 약사회장 등)	-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및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추진 - 코로나19 재 유행 대비 방역 후속 대응방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협조 및 독려 - 코로나19 대유행 대비 병상 확보 협조 등



감염취약시설 긴급대책회의



읍면동 방역담당자 관련 긴급회의



의료기관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방역대책 논의사항 및 조치결과 점검



의료기관 등 긴급대책회의

2 코로나19 재유행 선제적 대응 긴급대책회의

2022년 7월 26일 기준 감염재생산지수가 1.35로 4주 연속 1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재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선별진료소 방문 검사자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선제검사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총 검사자 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강화로 확진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나주시는 2022년 7월 27일, 오미크론 재유행 확산 시 감염취약시설의 위중증 환자 발생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 협의를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시행하였다. 부시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및 33개 시설 방역책임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정신병원, 요양시설의 확진자 확산에 따른 시설 방역책임자 협조에 대한 사안을 비롯하여 재유행에 따른 감염취약시설의 위중증 환자 발생 예방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위중증 환자의 확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4차 접종 독려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확진자 현황

(단위: 명)

총계	인구 대비	신규확진자 (전일대비증감)	치료중				퇴원	사망
			소계	집중 관리군	일반 관리군	기타		
44,016	37.8%	219(+27)	857	31	689	137	43,098	61

*2022년 7월 26일 기준

응급대응 협약 체결
기관 개요

기관명	주소	비고
나주종합병원	영산로 5419(성북동)	• 응급 혈액투석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운영(12병상)
빛가람종합병원	정보화길 49(빛가람동)	• 응급 혈액투석실 운영 •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운영(24병상)
나주시 의사회	금천면 금영로 946	• 의사회 회장: 나주방부의원 원장 •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3 코로나19 응급대응 협약 체결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를 받고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공조체계 유지가 중대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의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따라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사회 등 핫라인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나주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 실시, 재택치료 응급상황 핫라인 구축 및 정보 공유 등 상호 공조 체계 유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시 문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지원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 22일 나주종합병원, 빛가람종합병원, 나주시 의사회 회장과 코로나19 응급대응 협약을 체결하였다.